

『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별표 삭제(안 제3조)
-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및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의 위탁운영 기간 명시(안 제14조제2항)
-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지도·감독 주체 명시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기존의 장난감도서관 명칭과 위치가 명시된 별표 규정 삭제 및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계약내용을 단서 조항으로 추가하여 신설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